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경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5628

발의연월일: 2022. 5. 17.

발 의 자: 유경준 · 이명수 · 정우택

金炳旭・조명희・서정숙

태영호 • 이채익 • 유상범

강대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에 대하여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 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자격요건을 두고 있음.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재건축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재건축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는 타 지역의 재건축조합장에게 소량의지분을 주어 조합임원 자격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춘 후에 추진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례들이 있음. 이는 비리문제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조합임원의 자격요건을 강화한 입법취지를 형해화시키는 행위라고 할수 있음.

이에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서 이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의 추진위원 및 조합임원의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정비사업 조합의 운영을 투명하게 하려는 것임 (안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 신설).

법률 제 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제2호 중 "것"을 "것."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하나의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합임원의 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조합임원을 선임(연임을 포함한다)하는 경 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조합은	제41조(조합의 임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요	
건을 갖춘 조합장 1명과 이사,	
감사를 임원으로 둔다. 이 경우	
조합장은 선임일부터 제74조제	
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를 받을 때까지는 해당 정비구	
역에서 거주(영업을 하는 자의	
경우 영업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3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2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	
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	
지를 말한다)를 5년 이상 소	
유하고 있을 <u>것</u> <단서 신	<u>것</u> . <u>다만, 하나의 건</u>
<u>설></u>	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권을
	다른 사람과 공유한 경우에
	<u>는 전체 지분의 100분의 50</u>
	이상을 소유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